

##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식\* · 이태식\*\* · 조원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Report and Reward System on an Illegal Behavior of the Emergency Exit

Myeong Sik Kim\*, Tae Shik Lee\*\* and Won Cheol Cho\*\*\*

접수일자: 2012년 12월 14일/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23일

**요 약**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용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화재예방, 방재안전관리

**ABSTRACT**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emergency exit, by directly related to the civil<sup>o</sup>s dead in the fire situation, have limited by which the fire station take the on-side and control-centered way of business processing, it is expect to the effects in which the citizen have to concern and to take part. From 2010 years in the back-ground, it is operated nationally the report and reward system on an illegal behavior of the emergency exit, it is happened to the unfit operating situation in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the system up which the exit paparazzi act with intent to receive the reward payments. The study suggests solution through analyzing the illegal emergency exit operation result of sixteen counti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from year 2010 to 2011. Firstly, the report destination is adjusted to the multiple use establishments and the large-scale multiple use facilities over the limit level is limited under five times the report events of the same people in the minor endorsement. And the fine incomes should be inves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acting related with the exit. Secondly, for upgrade of the report accuracy, a reporter is received the possible information for the confirmation of an illegal act, has become to lead the pre-monitoring act which the reporter is can to take the safety education and to guide the information about season and vulnerable business location. Finally, considering the support way about the encounter facility, the fire officer is not happen to occur the repetitive report in the same place, is related to the volunteer service system the report acts, consider as the volunteer service time, and must support them to act as the disaster prevention volunteer.

**KEYWORDS** emergency exit, illegal behavior, report and reward system, fire prevention, disaster protection and safety management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정회원,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부소장  
(E-mail: synectix@yonsei.ac.kr)

\*\*\*정회원,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1. 서 론

소방방재청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0년도에 발생한 재난은 총 280,607건으로 366,9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이 6,758명, 부상 359,840명, 기타 313명이며, 재산피해는 3,219억 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중에서 화재는 전체 재난 발생 건수의 14.9%인 41,863건이 발생되었으며, 도로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0.9%인 226,878건으로 이러한 둘을 합하면, 전체 재난 발생건수의 95.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발생한 화재는 41,863건이며, 사망 304명, 부상 1,588명의 인명피해와 266,776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17,870건으로 전체의 42.7%에 이르고 있다.

2011년도 서울시민의 안전의식 조사(서울시 뉴미디어 담당관, 2011)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시민의 92.3%가 사회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평상시 비상구 확인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009년의 32.2%에 비하여,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 실시 이후 53.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제도가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포상금을 신고 건 당 5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집중적이고 독점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안전의식 함양의 목적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소방용구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도입되고 있고, 신고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대상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이 비상구 안전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비상구가 생명통로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

신고 내용 중에는 방화문에 일명 말발굽인 도어스토퍼(Door Stopper)를 설치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자동폐쇄장치를 파손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한 경우가 그 다음이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가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상구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위법이 아닌 사항의 신고를 포함한 신고폭주와 신고포상금이 조기에 집행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19세 이상만이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포상금을 현금에서 5만원 상당의 시장 상품권, 소화기 등의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상구 불법신고에 대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본 제도가 전반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어, 지역별 급한 순서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인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전국 시도별 운영결과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제도적, 업무 효율적, 시민만족도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신고집중 대상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소방방재와 비상구 이론

### 2.1 화재발생 현황

201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건수 43,875건, 인명피해 1,862명, 재산피해 256,528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2010년) 대비 화재건수는 4.8%(2,012건) 증가, 인명피해는 1.6%(30명), 재산피해는 3.8%(10,249백만원) 감소하였다(그림 1). 이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시민의 화재관련 안전의식 향상효과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2008~2011)의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간(2008~2011) 평균 화재가 5,974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257명(사망41, 부상216명), 재산피해 151억5,322만원이 발생하였다. 최근 4년간의 총 화재건수는 23,896건으로 연평균 -6.4%씩 감소추세이며, 사망자는 162명으로 연평균 -18.7%, 부상자는 862명으로 연평균 -16.3% 감소추세에 있으며, 일일평균 화재 16.4건, 사망 0.1명, 부상자 0.6명, 재산피해 42백만 원이 발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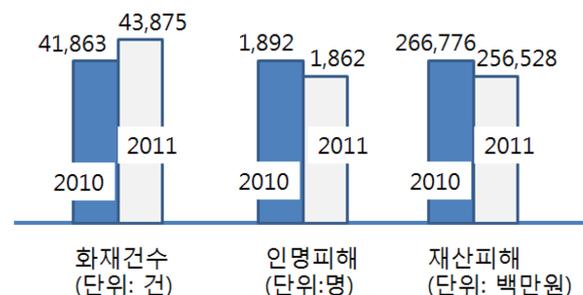


그림 1. 2011년도 전국 화재발생 현황(출처: 소방방재청, 2012)

표 1. 최근 4년간 화재현황(2008-2011년)

연도별	구분	화재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2011년		5,526	197	29	168	14,185,528
2010년		5,321	230	42	188	14,503,873
2009년		6,318	257	37	220	15,571,156
2008년		6,731	340	54	286	16,352,335
합계		23,896	1,024	162	862	60,612,892
4년 평균		5,974	257	41	216	15,153,223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2012)

## 2.2 소방방재 이론

### 2.2.1 화재예방 소방활동

화재예방활동이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소방방재청, 2009).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을 화재와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화재 사망자 434명 대비 10%를 저감한 391명 이내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시행, 소방검사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 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의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하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여서 이용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업무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관리,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소방검사를 위한 소방특별 조사제도가 2012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2012년1월 현재 화재예방을 추진하는 전국의 소방관서는 총 1,385개소로써 이중 119안전센터는 928개소로 전체 소방관서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구조대로 218개가 설치되어 전체 소방관서의 15.7%, 그리고 소방서가 192개소로써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소방공무원은 총 37,826명으로 그 중에서 119안전센터 인원은 25,316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소방서(본서)가 6,608명으로써 전체의 17% 그리고 구조대가 3,283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2012.1월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에 모두 191,871개소이고, 이중에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는 67,757개소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종 다중이용업소 11,725개소 중 고시원이 10,191개소(86.9%), 콜라텍업이

700개소(5.97%), 전화방이 640개소(5.46%), 수면방업이 194개소(1.66%)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특히 비상구가 완벽하게 확보되어야만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특별조사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중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체제에서 벗어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 및 소방안전관리자(기존 방화관리자)의 자체 점검에 맡기고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소방 안전관리제도이다.

### 2.2.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서울특별시 최근 4년간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현황은 표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망은 3명, 부상자는 41명이 발생하였으며, 고시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에서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부상자는 주로 노래 연습장 39%(16명), 고시원 26.8%(11명), 일반음식점 17%(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인명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2006년 서울 잠원동 나우고시텔(사망8, 부상9), 2008년 서울 논현동 데코빌 고시원(사망6, 부상7)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인명구조 우선 진압대책수립, 비상구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신고포상제운영 및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 등 초동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종합적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인적요인을 위주로 피난이 불가했던 사유를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망자는 수면 중 30.2%(49명), 음주상태 19.1%(31명), 지체장애 8%(13명) 순으로

표 2. 다중이용업소 소분류별 인명피해 현황

장소별	계	유형 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 점	제과 점영 업	휴게 음식 점	노래 연습 장	비디 오감 상실	비디 오 물소 극 장업	게임 제공 업	복합 유통 제공	학원	목욕 장업	찜질 방	영화 상영 관	산후 조리 원	고시 원	전화 방화 상 대화방	PC 방	수면 방
2011	사망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부상	8	1	0	2	0	0	3	0	0	0	0	0	0	0	0	2	0	0	0
2010	사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상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0	1	0
2009	사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상	10	2	0	3	0	0	2	0	0	0	0	1	0	0	0	0	0	1	1
2008	사망	2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상	16	0	0	2	0	0	11	0	0	0	0	0	0	0	0	3	0	0	0
합계	사망	3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부상	41	3	0	7	0	0	16	0	0	0	0	1	0	0	0	11	0	2	1
평균	사망	0.8	0.3	0	0.3	0	0	0	0	0	0	0	0	0	0	0	0.3	0	0	0
	부상	10.3	0.8	0	1.8	0	0	4	0	0	0	0	0.3	0	0	0	2.8	0	0.5	0.3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2012)

표 3. 인적 요인별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수면중	음주 상태	정신 장애	정신장애, 수면중	정신장애, 음주상태	지체 장애	지체장애, 수면중	지체장애, 음주상태	약물 복용	약물복용, 음주상태	관리자 부재	해당 없음
2011	사망	29	6	6	1	0	1	4	0	1	0	0	9
	부상	168	32	15	4	0	3	0	0	0	0	3	111
2010	사망	42	11	11	1	1	3	0	0	0	1	1	13
	부상	188	48	17	3	0	4	0	0	0	0	1	115
2009	사망	37	10	6	1	0	3	0	0	1	0	0	16
	부상	220	43	22	4	0	3	0	0	1	0	3	144
2008	사망	54	22	8	1	0	3	1	1	0	0	3	15
	부상	286	65	19	4	0	3	0	0	2	0	3	190
합계	사망	162	49	31	4	1	13	1	2	1	1	5	53
	부상	862	188	73	15	0	13	0	0	3	0	10	560
평균	사망	40.5	12.3	7.8	1	0.3	3.3	0.3	0.5	0.3	0.3	1.3	13.3
	부상	215.5	47	18.3	3.8	0	3.3	0	0	0.8	0	2.5	140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2012)

발생하였으며, 해당 없는 경우는 32.7%(5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수면 중 21.8%(188명), 음주상태 8.5%(73명), 정신장애 1.7%(15명), 지체장애 1.5%(13명)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당 없는 경우는 65%(560명)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발생 시 주로 수면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화재를 신속히 인지시켜 줄 수 있는 단독형 화재경보기 등 경보설비를 주거시설에 널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4년간 물적 요인을 위주로 피난이 불가했던 사유를 살펴보면, 표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사망자는 연기로 피난불가 32.1%(52명), 출구 잠김 13%(21명), 출구위치 미인지 3.1%(5명), 출구 장애물 1.9%(3명)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미상인 경우는 30.2%(49명)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

자는 연기로 피난불가 18.7%(161명), 출구 잠김 5.9%(51명), 출구장애물 3.5%(30명), 출구혼잡 1.2%(10명)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미상인 경우는 17.4%(150명)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연기로 인해 사상한 경우와 더불어 출구 잠김, 장애물, 혼잡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명피해(사망 24명, 부상 91명)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 폐쇄 등에 대한 집중적 단속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

표 4. 물적 요인별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출구				연기(화염)			방법창(문)			기타	미상	
		잠김	장애물	혼잡	위치 미인지	피난 불가	출구 혼잡	위치 미인지	피난 불가	잠김	연기로 피난불가			
2011	사망	29	3	0	0	0	10	0	0	0	0	0	7	9
	부상	168	10	4	0	0	43	0	0	1	1	0	89	20
2010	사망	42	2	3	0	3	17	0	0	0	0	0	1	16
	부상	188	8	23	0	4	39	0	0	2	0	0	81	31
2009	사망	37	3	0	0	1	9	0	0	1	1	0	14	8
	부상	220	15	1	7	3	35	1	1	4	1	0	114	38
2008	사망	54	13	0	0	1	16	0	0	1	0	0	7	16
	부상	286	18	2	3	2	44	0	0	1	0	1	154	61
합계	사망	162	21	3	0	5	52	0	0	2	1	0	29	49
	부상	862	51	30	10	9	161	1	1	8	2	1	438	150
평균	사망	40.5	5.3	0.8	0	1.3	13	0	0	0.5	0.3	0	7.3	12.3
	부상	215.5	12.8	7.5	2.5	2.3	40.3	0.3	0.3	2	0.5	0.3	109.5	37.5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2012)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제9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제11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하는 것이다.

### 3.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분석

#### 3.1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개요

비상구의 관리소홀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빈번하여 그 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유지 의무를 제도화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왔음에도 비상구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소에서 고의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때문에 화재발생 등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실정 이지만,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만으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이에 비상구 확보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상시 비상구를 감시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일명 : 비파라치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고,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 일반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다중이용업소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 하다.

대상별 위반행위별로 관계인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표 5의 정리 내용과 같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주: 지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제23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됐다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의 신고자는 서울특별시민은 누구든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가 있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령이나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그리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신고인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신고인에게 호응이 높아

표 5. 위반행위 및 벌칙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방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li> <li>-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li> <li>-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를 설치한 행위</li> <li>-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를 제거 또는 해체한 경우</li> </ul>	50~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li> <li>°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li> </ul>	30~100만원
다중이용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li> <li>-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li> <li>-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를 설치한 행위</li> <li>-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를 제거 또는 해체한 경우</li> </ul>	50~200만원

인터넷신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고의 독점으로 인한 특정인에게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3.2 전국 시도별 운영결과 분석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된 2년간(2010~2011년)의 전국의 운영현황을 신고서 접수현황,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률, 위반행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3.2.1 신고서 접수현황

신고건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11년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32,573건(2010년 15,882건, 2011년 16,691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고 건수가 상위인 시도를 살펴보면 1위가 서울로 총 9,191건(28.2%) 접수되었으며, 2위가 경기도로 6,972건(21.4%)을 차지하고 있으며, 3위는 대전으로 2,762건(8.5%) 순으로 집중신고 되었다.

신고건수가 하위인 시도는 제주도 49건(0.2%), 전남이 231건(0.7%), 충북이 384건(1.2%), 울산이 654건(2.0%)순으로 나타났으며, 최하위 제주도와 신고접수 1위 서울시와 9,142건(2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2.2 포상금 지급건수

2010~2011년 2년에 걸쳐 전국에서 신고 접수된 32,573건 중 포상금은 총 11,591건(35.6%)이 지급되었으며, 지급

건수가 상위인 시도를 살펴보면 1위가 서울로 4,317건(47%) 지급되었으며, 2위가 경기도로 2,507건(21.9%)순으로 대도시 위주로 지급비율이 높았다.

지급건수가 하위인 시도는 제주도로 총6건(0.1%), 전남이 33건(0.3%), 충북이 119건(1.0%), 광주가 120건(1.0%)순으로 나타났으며, 지급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는 지급건수 1위인 서울시와 4,179건(3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2.3 포상금 지급률

2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32,573건과 총 지급건수 11,591건을 시도별 비율로 살펴보면 서울이 총 접수 9,191건 중 4,317건 지급(47%)로 가장 높고, 부산이 총 접수 1,998건 중 867건 지급(43%) 순으로 40%이상의 지급률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급비율이 낮은 시도는 제주도가 총49건 접수에 6건 지급(12%), 전남이 231건 접수에 33건 지급(14%), 광주가 784건 접수에 120건 지급(15%)의 지급률로 조사되었다.

#### 3.2.4 위반행위별 현황

2년간 포상금 지급건수 11,591건을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포함)및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 8,359건(72%)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한 것이 2,160건(19%)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피난에 문제가 되는 걸림돌 적치 등 중요불법행위에 중점을 둔 당초 취지와는 다른 포상금의 지급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에 있어서도 경미한 위반행위(말발굽, 도어체크 등)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형 화재가 발생한 취약대상이나, 장애물 상습적치 등 인명피해우려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비상구신고포상제 제도 시행이후 2011년 까지 2년 동안 전국적인 신고건수는 32,573건 중 11,591건(35.6%)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을 지급한 11,591건 중 위반행위별로는 폐쇄·훼손행위가 8,359건(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분류에 있어서는 신고서 접수는 서울이 전국 신고건수 32,573건 중 9,191건(28.2%)으로 가장 많고, 포상금지급에 있어서도 전국 포상금지급 건수 11,591건 중 서울이 4,317건(37%)으로 가장 많고, 포상금 지급률에 있어서도 서울이 신고접수 9,191건 중 4,317건(47%)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년간 총 32,573건 접수에 포상금지급건수는 11,591건으로 35.6%의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포상금지급 11,591건 중 폐쇄·훼손의 위반행위가 8,359건(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서울특별시 운영결과 분석**

신고접수와 포상금지급에 있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2010.7.12)을 마련하여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7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서울시에서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3.3.1 신고방법**

2010년 7월 15일 조례시행이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지급을 위한 관계인의 신고건수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총 9,191건으로 2010년 2,619건, 2011년 6,572건이다. 이를 신고방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고가 4,204건(45.7%)으로 가장 많고, 우편신고가 3,954건(43%), 방문 990건(10.8%), Fax신고 43건(0.5%)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 중 소방관서의 방문이나, 관계 공무원과의 별도 접촉이 필요 없는 방법(인터넷, 우편, Fax)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신고인들이 이러한 비노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신고의 편리성과 비노출로 인한 인터넷 신고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취약대상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확인 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해당사항을 개인이 신고접수 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신고자나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3.3.2 월별 접수현황**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한 신고서 접수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먼저 2010년도의 경우 7월 15일 제도 시행이후 총 2,61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7월 15일부터 8월 31까지 1,525건(58%) 접수되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9월에는 322건(12.3%), 10월에 269건(10.3%), 11월에 191건(7.3%), 12월에 312건(12%)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한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집중된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전문신고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업종이나 대상, 또는 그 위험이 현저한 업종이나 대상 현황을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예방효과가 높이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시민들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홍보에 의하여 참여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겠으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모 소방서에 접수된 신고자 53명의 주소지를 분석해 본 결과 소방서 관할 내에 주소지를 둔 신고자는 1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19%선에 지나지 않았다.

**3.3.3 대상별 신고접수 현황**

2년간 이뤄진 신고건수 9,191건을 업종별로 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4,590건(50%)으로 가장 많고, 복합건물이 2,406건(26.2%), 다중이용시설(PC방,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학원 등)이 1,108 건(12%), 업무시설이 470건(5.1%), 공동주택이 365건(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신고 대상에 있어서도 과거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던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적고, 신고자가 접근하기 편한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민원발생 등과 관련하여 서울에서는 조례가 2012년 7월 폐지되었다.

### 3.3.4 위반 현황

2년간 이뤄진 신고건수 9,191건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8,581건(93%)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가 610건(7%)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5월 5일 발생한 부산 노래주점화재(사망9, 부상 25) 피해는 평상시 이용한 시민들이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험이 방치된 상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그 특성상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중이용업소 이용시민들이 보다 주도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다.

### 3.3.5 위반 행위별 세부유형

위반현황을 신고사례별로 살펴보면 비상구등의 폐쇄, 훼손의 경우 방화문 도어체크훼손이 3,818건(41%)으로 가장 많고, 방화문 고임장치(말발굽)가 3,456건(38%), 방화문제거 1,061건(12%), 옥상 출입문 잠금 135건(1%), 출입구 비상구 폐쇄가 111건(1%)으로 나타났으며, 피난시설 등 주위에 장애물적치의 경우 계단통로장애물이 351건(4%), 출입구 비상구 장애물이 259건(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인들의 신고유형이 발견과 사진촬영이 쉽고 포상금지급이 확실한 방화문 고임장치(일명 말발굽) 설치나 자동폐쇄장치 해체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집중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 3.3.6 관련법에 의한 대상별 포상금 지급 분석

지난 2년간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포상금 지급내역 총 4,317건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먼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급건수는 192건(4.5%)으로 이중 비상구등 폐쇄, 훼손이 171건, 통로 상 장애물이 21건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125건(95.5%)으로 피난시설 훼손 등이 184건, 장애물설치가 77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폐쇄, 훼손이 3,864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제도시행이후 2년 동안 소방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가 전체의 95.5%로 다중이용업소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주요 신고내용이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훼손(자동폐쇄장치, 고임장치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2011년의 경우 전체 포상금지급대상 3,461건 중 3,189건(92%)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방안

### 4.1 제도 개선방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조례 제4998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바,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으로 제2조(정의),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12조(신고인의 정보 보호), 제13조(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 과태료 수입금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 사고에 있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반면, 실제 신고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소방대상물의 경우가 전체의 95.5%로 다중이용업소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바, 신고대상에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하고, 조례 본문상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치를 바꾸어 신고의 비중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두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의 개선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무조건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방화문에 말발굽설치나, 자동폐쇄장치 이탈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는 동일인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부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의 반복적 신고로 인한 제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품의 지급)의 개선사항으로서, 신고포상금 지급은 소방관련 피해경감용품인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나, 이의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12조(신고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 신고인이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4 및 제46조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강조함으로써 피신고인의 불만 섞인 과잉 요구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하여 신고인과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확보)에서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과태료수입은 일반회계예산 확보금액의 10배 이상의 규모가 입금되고 있지만, 이러한 수입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인바, 비상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 관련 재해피해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하여는 그 수입예산의 일부가 신호등 증설, 교통위반사항 단속기기 구입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제14조(과태료 수입의 활용)를 신설하여 과태료 수입금에 대하여는 비상구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 설치, 소화기 보급, 단독형화재 경보기 설치 등의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효과에 의하여 피신고인의 시설물이 단순히 과태료의 불이익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후에 불안정한 요인이 개선되어 보다 더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화재로부터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 4.2 업무효율 개선방안

조례 제5조(신고)에 의하면, 신고자는 불법행위 신고를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나,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신고의 신속성과 비노출의 편리성으로 인한 인터넷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서,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이 현재 1/3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바,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효율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로,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신고가 포상금 지급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신고자가 신고확인을 인터넷, 우편, 방문 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신고자의 신고가 위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신고자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자가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활동이 적극적인 사람이므로, 시기별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을 안내하여 시민들에 의한 사전 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로, 신고자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고활동이 적극적인 사람을 우선으로 소방서별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인터넷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시교육을 통하여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현장방문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행정력소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대형 화재사고를 막기 위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던 업종에 대하여 불법행위 신고활동이 균형을 잡고 전개되도록 신고에 적극적인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추가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신고활동에 의하여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 할 수 있으려면 신고가 업종별 고른 분포가 되도록 좀 더 적극적인 시민홍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 노래주점 사고에서 보듯이, 유흥주점을 겸한 노래방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비상구 전문신고자들이 이러한 유흥주점 겸 노래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고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안감이 높았던 사건, 사고 중 지난 10년간(2000~2010) 중앙 및 지역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 중 화재 사건만을 발췌해 살펴보면, 발생분포에 있어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 발생되었고, 그 업종에 있어서도 상가,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창고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2011년도 서울시에 접수된 신고건수 6,572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근린 생활(3,598), 복합건물(1,575), 다중업소(592), 업무시설(380), 공동주택(266), 판매시설(45), 교육연구(45), 의료시설(18), 문화 및 집회(16), 노유자(15), 공장(13), 숙박시설(7), 운수시설(1), 지하가(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형화재 발생현황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대형화재 빈도가 높은(3건 이상) 업종의 경우 다중업소 592건, 판매 시설 45건, 공장 13건으로 그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대형화재 빈도가 낮은(2건 이하) 업종 중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 3,59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피해가 큰(사망 10명 이상) 업종의 경우 운수 1건, 업무 380건, 노유자 13건 인 반면, 피해규모가 적은 근린생활시설에 신고가 집중되었는데, 대형사고가 발생한 업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업종으로는 종교시설(1건), 창고시설(3건), 지하구(1건), 문화재(1건), 주택(1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 4.3 시민 만족도 개선방안

현재의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신고자와 피 신고자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 모두가 불만의 요소들을 안고 있다.

신고자는 어렵게 신고한 내용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분이 노출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신고자의 경우 반복적인 적발로 인한 과태료 납부의 부담과 함께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위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등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에 의한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과 사업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신고인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인이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사항이 적합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정보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자 정보 제공서비스 체계 개선도 고려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공개를 요청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 정보의 무단 제공시 처벌규정을 규정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신고자의 경우에, 근린생활, 복합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비상구 불법행위의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비상구에 안전매뉴얼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소화기나 단독경보기 등에 신고가 된 장소임을 표기하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고, 나아가 대형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비상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 관련 재해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퇴직소방공무원이나, 전직(前職)자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이들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협회의 경우, 장애인 우선주차 장소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관련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듯이, 비상구 불법행위 포상제도에 의하여 얻어진 과태료 수입이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활동을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고자의 활동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자가 포상금이 아닌 진정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방재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방재자원봉사제도와 화재예방활동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접수율이 낮아 여전히 화재위험에 놓여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고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신고 접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시설주체나 건물주가 스스로 신고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주체 또는 건물주가 제도에 부응하여 정리된 비상구를 찍은 영상을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제도 속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 5. 결 론

본 연구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지난 2년간(2010~2011)의 운영결과를 분

석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소방행정의 업무효율 및 시민만족도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신고대상을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1인당 신고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신고인의 정보보호 강화와 과태료수입을 비상구 관련 재해예방사업에 활용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업무 효율적 측면으로 신고자에게 시기별 취약업종에 대한 안내를 통해 내실 있는 민간주도의 예찰활동이 되도록 유도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로 신고자의 신고 정확성을 높여 과도한 현장방문으로 인한 행정력소모를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시민만족도측면에서 신고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정보안내와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 신고대상에 안전 매뉴얼설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태료수입을 비상구 관련 재해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와 퇴직 소방 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적극 활용하여 화재예방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넓혀 민간 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고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지

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2012), 신고 포상금제도 분석 평가, p75.  
 김명식 (2012),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p.53.  
 남홍우 (2011),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방안, 공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p. 6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0),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p. 2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2),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p. 3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2),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p.22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2), 최근 4년간 서울시 화재사상자 통계분석, p. 280.  
 소방방재청 (2010),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성과 보고서, p. 120.  
 소방방재청 (2011), 비상구 신고포상금제 운영개선방안 검토, p.64.  
 소방방재청 (2011) 전국 화재발생현황 분석, p.550.  
 소방방재청 (2012)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p.540.